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7. 10. 19.>

(앞 쪽)

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소재지	

신청내용	변경내용	[ ] 성명 또는 상호 [ ] 대표자 [ ]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[ ]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[ ] 석유저장시설 규모
	변경 전	
	변경 후	
	변경사유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9조제2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석유관리원 귀중

첨부서류	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	수수료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 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 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	→	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한국 석유관리원		한국 석유관리원		시·도지사		시·도지사		한국 석유관리원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17조,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1)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
2) 양도・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